

第120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1號(附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4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制定條例(案)	6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2面
5. 서울特別市鐘路區環境基本條例中改正條例(案)	34面
6. 서울特別市鐘路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6面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58
----------	-----

제출일자 : 2002. 4.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 휴직 후 복직한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text{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 - \text{당해년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년도 연가일수}$$

-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정비(안 제23조)

3. 개정근거

-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 [행정자치부 운영12100-274(2002. 3.23)]
-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 [서울특별시 인사12135-1046(2002. 3.28)]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2001.6.30 대통령령 제17285호)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별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text{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 - \text{당해년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년도 연가일수}$$

제2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u>결근 일수·휴직 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u>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u>결근 일수·정직 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u>
<신 설>	② <u>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u> ○휴직자의 연가일수 $\frac{12\text{월}-\text{당해년도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년도연가일수}$
② (생략)	③(현행 제21조제2항과 같음)
③ (생략)	④(현행 제21조제3항과 같음)
제23조(공가)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4.(생략) 5. <u>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u> 6.~8.(생략)	제23조(공가)----- ----- ----- 1.~4.(현행과 같음) 5. <u>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u> 6.~8.(현행과 같음)

2.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59
----------	-----

제출년월일 : 2002. 3.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총무과에 소속되었던 동행정업무팀이 자치행정과 자치행정업무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2. 주요골자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동행정업무담당주사를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로 변경(제6조)

3. 개정근거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4. 예산수반사항 : 없 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동행정업무담당주사”를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간사및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동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간사및서기)-----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3. 서울특별시종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조례(안)

의안 번호	860
----------	-----

제출일자 : 2002. 4 .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정이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변경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시경관의 향상 및 시민생활환경 개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광고물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설치운영 : 소위원회 위원의 수는 3인 이상으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안 제4조제2항)
- 위원회의 운영 등 : 법령의 규정 및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및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안 제5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
 -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설치 : 300만원이하
 - 옥외광고업자 법정교육 미이수자 : 100만원이하(안 제12조제1항)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불법 가로, 돌출, 지주, 옥상간판 등 설치시 500만원이하(안제13조제1항)

3. 제정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2001.07.24, 2001.11.22)
- 서울특별시자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정 표준안 시달(2002.02.08)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제정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①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사항과 표시기간 연장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연립간판의 허가·신고 및 표시방법 등) ①구청장은 연립간판(2이상의 업소의 간판을 하나의 게시시설 또는 구조에 각각 표시하는 간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으며,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게시시설은 그 게시시설이 설치될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관리자가, 광고물은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립간판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영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또는 과장급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의 수는 3인 이상으로써 위원회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

③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제34조 내지 제36조 및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조례(시조례를 포함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가.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

나. 세로 5.0미터이상의 돌출간판

다.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라.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마.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할 현수막게시시설

바. 표시면적 1제곱미터이상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사. 표시면적 5제곱미터이상의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아. 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외의 광고물등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다만, 백열등 또는 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소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허가신청 전에 도면·서류 등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심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

제7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광고물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 후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첨부(재개업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계획(이하 이 조에서 "교육계획"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의 범

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실시 방법·수강절차·비용 및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위탁) ①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 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교육 위탁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위탁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월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의 징수 및 그 집행내역을 매년 12월31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제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제11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에 의하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수수료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중 산업체 구인벽보, 미아찾기 벽보, 기타 시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 이 경우 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이 수립한 광고물 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설치하거나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④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광고물 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설치하거나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50퍼센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5에 의한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세부기준은 별표 6에 의한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반환)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위한다.

제15조(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①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특정구역의 광고물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광고물등의 특별정비사업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2. 이자율 : 연 5%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경제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금리의 보전·감면 또는 기간연장 등을 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보조 또는 융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위원회에서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기타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종로구 재정 관련 공무원과 재정 또는 광고물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심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 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업무 또는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별표1]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9조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 교육	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법규 - 4시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종사자의 자세 - 1시간 	신규로 옥외광고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필요시 종업원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 전에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종사이후 최초로 실시 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옥외광고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표시에 관한 사항 3시간 면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옥외광고업자 (필요시 종업원도 실시)	○ 관계 법령의 제·개정시 실시
기타교육	별도로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제11조 관련)

(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 위	기 준	수 수 료
1. 가로형·세로형간판 가. 일반 간판(가로형·세로형간판) 나. 건물 측·후면 4층이상의 판류형 간판(영 제15조제4호)		개	6제곱미터이하	4,000
		m ²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1,500
		개	5제곱미터이하	5,000
		개	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20,000
		개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40,000
		m ²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4,000
2. 돌출간판 이·미용업소 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개	1제곱미터이하	10,000
		개	1제곱미터초과 3.5제곱미터 이하	20,000
		개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30,000
		m ²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2,000
		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함)	5,000
3. 공연간판 가. 신규, 기간연장, 기타변경 나. 내용변경		개	해당 광고물(벽면·지주)에 준함	5,000
4. 옥상간판		개	10제곱미터이하	50,000
		개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100,000
		개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	200,000
		m ²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4,000
5. 지주이용간판		개	1제곱미터이하	5,000
		개	1제곱미터초과 5제곱미터이하	10,000
		개	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20,000
		m ²	1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의 면적	2,000
		m ²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4,000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지상에 표시하는 것 다. 옥상에 표시하는 것		개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20,000
			옥상간판에 준함	

7.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 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개 m ² 개	1제곱미터이하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20개이하 20개초과 매20개까지 가산	3,000 1,000 15,000 10,000
8. 교통시설(지하도)이용광고물	개 개	5제곱미터이하 5제곱미터초과	15,000 20,000
9.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열차·자동차·선박·항공기	대 대 m ²	1.5제곱미터이하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500,000 2,000 2,000
10. 선전탑	개		20,000
11. 아취광고물	개		20,000
12. 창문이용 광고물	개		20,000
13. 현수막 가. 건물의 벽면 현수막 나. 지주이용 현수막 다. 지정게시대 현수막 라. 현수막 게시시설	개 m ² 개 개	20제곱미터이하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광고물 종류별 기준금액의 2분의 1	20,000 1,000 2,000 10,000
14. 벽보	매	20매이하 20매초과 50매이하 50매초과 매50매까지 가산	5,000 10,000 10,000
15. 전단	매	매1,000매까지	5,000
16. 연립간판의 게시시설 가. 신규 나. 기간연장, 변경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2분의 1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4분의 1	
17. 주소·성명 등 변경 (영 제9조제2항)	건		5,000
18. 전광류 광고물의 내용변경	건		30,000
19. 기타 광고물 가. 차량탑재 영상광고 나. 공중전화 부스이용 광고 다. 깃발이용광고 라. 기타종류의 광고물		옥상간판(전광판)에 준함 일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준함 지주이용 현수막에 준함 가장 유사한 광고물에 준함	

※ 수수료의 계산방법

- (1) 수수료 산정은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만 산정(3자리이하는 절사)하며, 지주면적을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입체형, 입체형문자·모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하되, 입체형문자·도형으로 표시하는 벽면간판에는 계산된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백열등·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각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기준으로 함)
- (4)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규격·위치·장소변경 등 기타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액을 징수한다. 다만, 규격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해당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액 전액을 징수한다.
- (6)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립간판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 (7)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선전탑 등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토지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이용료·사용료 등은 관계법령 또는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3]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11조 관련)

(단위 : 원)

광 고 물 등 의 종 류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과 건물 측·후면 4층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관류이용 가로형간판,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	22,000
	연면적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	45,000
	연면적 40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마다 가산	3,0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연면적 3.5제곱미터이하	15,000
	연면적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22,000
	연면적 10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마다 가산	3,000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	15,000
	연면적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22,000
	연면적 20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마다 가산	1,500
4. 현수막게시시설	연면적 40제곱미터이하	22,000
	연면적 40제곱미터초과 80제곱미터이하	45,000
	연면적 80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마다 가산	2,000
5. 기타 광고물등	가장 유사한 광고물등에 준함	

※ 수수료의 산정방법

- (1) 광고물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1을 산정한다(단 순지주는 산정에서 제외).
-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각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기준으로 함).
- (3) 기타 산정방법은 별표 2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별표4]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제11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 수 료	관 련 법 규
신 규	업 소 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 소 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 사항 중 관할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와 업소명을 변경한 때의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표5]

옥외광고물등의 과태료부과 기준(제12조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 연면적 0.5제곱미터미만	8만원
▪ 연면적 0.5제곱미터이상 0.8제곱미터미만	13만원
▪ 연면적 0.8제곱미터이상 1제곱미터미만	19만원
▪ 연면적 1제곱미터이상 1.3제곱미터미만	25만원
▪ 연면적 1.3제곱미터이상 1.6제곱미터미만	30만원
▪ 연면적 1.6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39만원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2.3제곱미터미만	45만원
▪ 연면적 2.3제곱미터이상 2.6제곱미터미만	60만원
▪ 연면적 2.6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79만원
▪ 연면적 3.0제곱미터	80만원
▪ 연면적 3.0제곱미터초과	79만원 + 3제곱미터초과면적 0.5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 연면적 0.5제곱미터미만	5만원
▪ 연면적 0.5제곱미터이상 0.8제곱미터미만	7만원
▪ 연면적 0.8제곱미터이상 1제곱미터미만	9만원
▪ 연면적 1제곱미터이상 1.3제곱미터미만	15만원
▪ 연면적 1.3제곱미터이상 1.6제곱미터미만	20만원
▪ 연면적 1.6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29만원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2.3제곱미터미만	35만원
▪ 연면적 2.3제곱미터이상 2.6제곱미터미만	40만원
▪ 연면적 2.6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49만원
▪ 연면적 3.0제곱미터	50만원
▪ 연면적 3.0제곱미터초과	49만원 + 3제곱미터초과면적 0.5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
나. 현수막	
(1) 표시면적에 따른 부과기준	
▪ 면적 1.0제곱미터미만	5만원
▪ 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7만원
▪ 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9만원
▪ 면적 3.0제곱미터이상 3.7제곱미터미만	13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3.7제곱미터이상 4.4제곱미터미만 ▪ 면적 4.4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 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 면적 6.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 면적 8.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 면적 10.0제곱미터 ▪ 면적 10.0제곱미터초과 	<p>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49만원+1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 당 10만원 가산</p>
<p>(2) (1)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p>	<p>해당 과태료 금액의 2배적용</p>
<p>다. 벽 보</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 10장 	<p>장당 1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 20장 	<p>장당 1만5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장이상 	<p>장당 2만5천원</p>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 10장 	<p>장당 1만5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 20장 	<p>장당 2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장이상 	<p>장당 3만원</p>
<p>라. 전 단</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 10장 	<p>장당 5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 20장 	<p>장당 1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장이상 	<p>장당 1만5천원</p>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 10장 	<p>장당 1만5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 20장 	<p>장당 2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장 이상 	<p>장당 3만원</p>
<p>1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p>	
<p>가. 연 1회 위반자</p>	<p>25만원</p>
<p>나. 연 2회 위반자</p>	<p>45만원</p>
<p>다. 연 3회 이상 위반자</p>	<p>100만원</p>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 3>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별표6]

옥외광고물등의 이행강제금부과 기준(제13조 관련)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금액
1. 가로형·세로형·공연간판	
▪ 면적 20제곱미터미만	20만원
▪ 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30만원
▪ 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40만원
▪ 면적 4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45만원
▪ 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55만원
▪ 면적 6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65만원
▪ 면적 7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75만원
▪ 면적 80제곱미터이상 90제곱미터미만	85만원
▪ 면적 9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95만원
▪ 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20제곱미터미만	110만원
▪ 면적 120제곱미터이상 140제곱미터미만	130만원
▪ 면적 140제곱미터이상 160제곱미터미만	145만원
▪ 면적 160제곱미터이상 180제곱미터미만	165만원
▪ 면적 18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185만원
▪ 면적 200제곱미터	200만원
▪ 면적 200제곱미터초과	199만원+2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2. 돌출간판	
▪ 연면적 20제곱미터미만	20만원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30만원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40만원
▪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49만원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55만원
▪ 연면적 6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65만원
▪ 연면적 7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75만원
▪ 연면적 80제곱미터이상 90제곱미터미만	85만원
▪ 연면적 9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95만원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20제곱미터미만	110만원
▪ 연면적 120제곱미터이상 140제곱미터미만	130만원
▪ 연면적 140제곱미터이상 160제곱미터미만	150만원
▪ 연면적 160제곱미터이상 180제곱미터미만	170만원
▪ 연면적 18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190만원
▪ 연면적 200제곱미터	200만원
▪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199만원+2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금액
<p>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0.5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0.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3.5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3.5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 4.5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4.5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6.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8.0제곱미터이상 9.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9.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0.0제곱미터 ▪ 연면적 10.0제곱미터초과 	<p>30만원</p> <p>35만원</p> <p>40만원</p> <p>48만원</p> <p>55만원</p> <p>65만원</p> <p>80만원</p> <p>95만원</p> <p>110만원</p> <p>130만원</p> <p>150만원</p> <p>170만원</p> <p>190만원</p> <p>200만원</p> <p>199만원+1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p>
<p>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판류형 가로형간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2.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6.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8.0제곱미터이상 9.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9.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2.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2.0제곱미터이상 14.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4.0제곱미터이상 16.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6.0제곱미터이상 18.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8.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2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2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35.0제곱미터미만 	<p>30만원</p> <p>35만원</p> <p>40만원</p> <p>49만원</p> <p>55만원</p> <p>65만원</p> <p>75만원</p> <p>85만원</p> <p>95만원</p> <p>110만원</p> <p>130만원</p> <p>150만원</p> <p>170만원</p> <p>190만원</p> <p>210만원</p> <p>230만원</p> <p>245만원</p>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35.0제곱미터이상 40.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 4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45.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50.0제곱미터 ▪ 연면적 50.0제곱미터초과 	<p>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299만원+5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p>
<p>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p> <p>가. 선전탑·아취광고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5.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p>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이상 	<p>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20.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 (100만원이하)</p> <p>40만원 60만원 80만원 + 3개초과 1개당 5만원 가산 (100만원이하)</p>
<p>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p> <p>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5.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p>나. 교통안내소</p> <p>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p> <p>라.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인정한 공공시설물</p> <p>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공공시설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p>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20.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 (100만원이하) 일반 가로형간판에 준함 지주이용간판에 준함</p> <p>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p> <p>25만원 30만원</p>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50제곱미터이상 	<p>35만원 36만원 + 15.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 (50만원미만)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p>
<p>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p>	
<p>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p>	
<p>가. 비행선</p>	
<p>(1) 무인비행선</p>	<p>15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0제곱미터미만 	<p>150만원 + 10.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p>(2) 유인비행선</p>	<p>20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0제곱미터미만 	<p>200만원 + 10.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p>나. 그밖의 교통수단</p>	<p>1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제곱미터미만 	<p>2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p>29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p>35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p>45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p>5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0제곱미터 	<p>49만원 + 1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0제곱미터초과 	<p>10만원 가산</p>
	<p>가로형간판에 준함</p>
<p>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p>	

※ 이행강제금 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 4> 이행강제금 금액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 리 자			⑱ 변경 사항	⑲ 비고
	② 성명	③ 주민 등록 번호	④ 업소 명	⑤ 전화 번호	⑥ 주소	⑦ 옥외 광고 업 신고 번호	⑧ 종류	⑨ 수량	⑩ 규격	⑪ 표시 위치	⑫ 표시 기간	⑬ 광고 내용	⑭ 준공 일자	⑮ 성명	⑯ 주소	⑰ 전화 번호		

364mm×257mm 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2호서식>

음외광고업 신고(변경)대장

① 신고 번호	② 신고 년월일	③ 업소명	대 표 자			⑦ 영업장소 재지	⑧ 영업 내용	⑨ 종업원 수	⑩ 변경 사항	⑪ 비 고
			④ 성 명	⑤주민등록 번호	⑥ 주 소					

353mm×250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의 교육이수 대장

① 연번	② 교육의 종류	③ 교육년월일	④ 교육시간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업체명	⑧ 비 고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 60g/m²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물등의 교육위탁지정서

수 탁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법인)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

190mm×268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9호서식>

광고물등 반환 청구서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 종류			⑤수 량	
⑥규격 및 형태			⑦표시내용	

위의 광고물등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

광고물등 인수증

인 수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 종류			⑤수 량	
⑥규격 및 형태			⑦표시내용	
④매각한 광고물등의 매각금액			원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

190mm×268mm(신문용지 54g/m²)

4.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61
----------	-----

제출년월일 : 2002. 4. 10.

제출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도시가스시설 설치비를 저 금리로 융자금 지원 및 융자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융자범위 중 도시가스 사용시설비 및 공급시설비의 70%이내에서 80% 이내로 확대(안 제7조)
-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년리 6%에서 3%로 인하(안 제8조)
- 종전에 대출한 융자금에 대하여도 변경된 이율을 적용(안 부칙)

3. 개정근거

-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통보
(서울특별시 산업57244-355호 2002. 2. 6)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사용시설비의 70%이내"를 "사용시설비의 80%이내"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공급시설비의 70%이내"를 "공급시설비의 80%이내"로 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 중 "년리 6%"를 각각 "년리 3%"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이미 대출된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하여도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용자범위) 이 기금에서 용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시설자금 :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u>사용시설비의 70%이내</u> 2. 공급시설자금 :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u>공급시설비의 70%이내</u> 다만, 암반 및 지하시설물 등 지장물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장기 및 공사비 과다 소요 등 특수 난공사 지역의 경우 공급시설비의 100%이내 	<p>제7조(용자범위)-----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용시설비의 80%이내</u> 2.----- -----<u>공급시설비의 80%이내</u> ----- ----- -----
<p>제8조(이자율등) 용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시설자금 : <u>년리 6%</u>(3년 균등분할 상환) 2. 공급시설자금 : <u>년리 6%</u>(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p>제8조(이자율등)-----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년리 3%</u>(----- --) 2.----- <u>년리 3%</u>(----- -----)

5.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기본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62
----------	-----

제출년월일 : 2002. 4. 10

제출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 현재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10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환경보전위원회 위원을 20인으로 정비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10인을 20인으로 정비하여 구민참여와 실천운동으로 전개 및 확산 등

3. 개정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36조
- 환경기본조례법 21조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2항중 “10인이내” 를 “20인이내”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 <구민참여 등></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구민환경보전 시책의 수립 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환경보전위원회를 둔다.</p> <p>③ <생략></p>	<p>제21조 <구민참여 등></p> <p>① <현행과같음></p> <p>② ----- ----- -----20인 이내의----- -----</p> <p>③ <현행과같음></p>

6.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57
----------	-----

제출년월일 : 2002. 4. 10.
제 출 자 : 종 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조례3조 기금의 용도에 “부상자치료”를 삽입하여 재난사고로 인한 부상자 발생시 기금 지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3조제1항4호 기금의 용도에 “부상자 치료”를 삽입토록 개정

3. 개정근거

-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3조

4. 예산수반사항 : 없 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안)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제1항4호중 “인명구조”를 “인명구조, 부상자치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금의용도)①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p> <p>1. ~ 3. (생략)</p> <p>4.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u>인명구조</u> 및 <u>피해시설의 응급복구</u> 등 응급조치</p> <p>5. ~ 6. (생략)</p>	<p>제3조(기금의용도)①-----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인명구조, 부상자치료</u>----- -----</p> <p>5. ~ 6. (현행과 같음)</p>

